

제 99호
2015.09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I.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II.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자치 FOCUS 제99호(2015. 9.)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섭
02-3488-7324, sjs@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효
02-3488-7323, hyo@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61)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krila.re.kr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I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1. 서론

- 지방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의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자부담원칙,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적극적·창조적인 행정 및 경제활동 등이 작용하는 세외수입을 통한 세입증대는 중요함
 - 2013년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입 197조 원 중 62조 원으로 31%를 점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재원 116조 원 중 54%를 점하여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회계기술상 수입인 명목상 세외수입이 61%(38조 원)이고 실제적 의미의 세외수입은 39%(24조 원)로 지방세입의 12%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은 명목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너무 크며, 명목적 세외수입과 실질적 세외수입이 혼재되어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여 징수·관리체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체계도 비효율적임
 - 세외수입의 개념은 지방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광의),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협의),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최협의)으로 세외수입 유형을 기초로 애매하게 정의됨
 - 세외수입의 유형은 세수의 계속성 및 안정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회계의 귀속성을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을 망라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수입과 사업수입을 실질적 수입으로 임시적 수입과 사업외수입을 명목적 수입으로 구분함. 세원의 성격보다는 외형에 중점을 두어 분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표 1〉 지방세외수입의 유형 구분

회계	유형(종류)	성격
일반회계	경상적 수입(사용료, 수수료 등)	실질적 수입
	임시적 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이월금, 전입금 등)	명목적 수입
특별회계	사업수입(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 등)	실질적 수입
	사업외수입(이월금, 전입금 등)	명목적 수입

-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자치단체별로 특정 세외수입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혼재되어 단위사업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외수입관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함

-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이 법률에 맞게 부과 징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방재원 확충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이 큼
- 현재 지방세외수입법에 맞게 회계기술상의 세외수입이 예산과목에서 별도과목으로 분리되었으나, 앞으로 세외수입의 새로운 개념 정의 및 유형구분, 업무시스템의 통합 등이 필요함

2. 지방세외수입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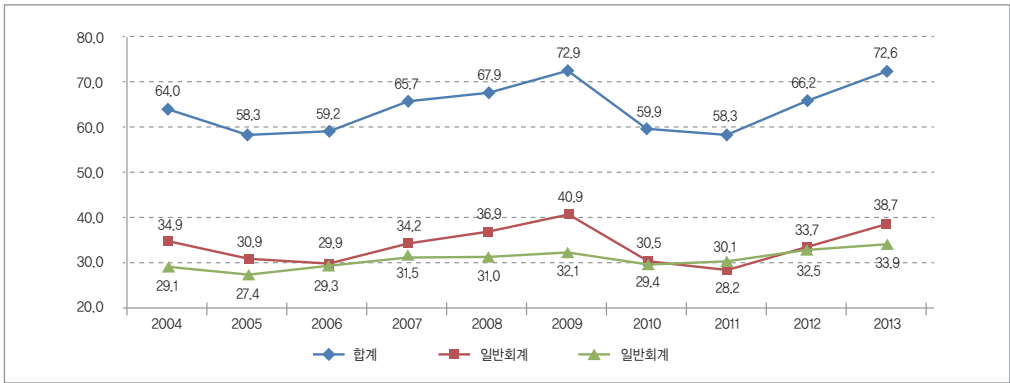
1) 실질적 자원조달기능 취약함

- 지방세외수입은 2013년도 결산 총계기준으로 73조 원(순계기준 62조 원) 정도로 지방세 수입 54조 원보다 규모가 많음
- 지방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감에 의해 전체 규모의 변동을 가져오며, 지난 10년 동안 이 2개의 세외수입은 전체 세외수입의 30~40%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해 오고 있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그림 1〉 세외수입규모 신장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 2013년 지방세외수입 72.6조 원은 일반회계 38.7조 원(53.3%), 특별회계 33.9조 원(46.7%)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19.2조 원(26.4%), 공기업특별회계 17.2조 원(23.8%)임

〈표 2〉 지방세외수입의 회계별 규모 및 비중(2013년)

(단위: 억 원, %)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타	공기업
726,076 (100)	386,961 (53.3)	339,115 (46.7)	191,868 (26.4)	172,469 (23.8)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분류하면 총 세외수입 72.6조 원 중 경상적 수입 14.4조 원 (19.8%), 임시적 수입 58.2조 원(80.2%)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약하여 지방세에 비하여 재원조달기능이 취약함

- 광의의 세외수입(세외수입 전체) : 72.6조 원(100%)

- 협의의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14,4조 원(19.8%)
- 최협의의 세외수입(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 : 5조 원(일반회계 13%, 총 세외수입의 7%)

〈표 3〉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규모와 비중(2013년)

(단위: 억 원, %)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소계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
726,076 (100)	143,961 (19.8)	582,115 (80.2)	386,961 (100)	50,358 (13.0)	336,603 (87.0)	339,115 (100)	93,603 (27.6)	245,512 (72.4)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목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질적 지방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18.4%,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수입을 포함할 경우 27.8%로 전체 세외수입의 1/4 정도만이 실질적인 재원조달기능을 하는 세외수입임

〈표 4〉 실질적 세외수입의 규모와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3	2012	
세외수입 총액			726,076	661,803	
실 질 적 세 외 수 입	일반회계	경상세외수입(전체)	50,358	47,120	
		임시세외수입(기타 수입)	45,020	29,362	
		임시세외수입(전년도 수입)	3,237	3,235	
	기타 특별회계	경상세외수입(전체)	25,276	24,248	
		임시세외수입(기타 수입)	6,543	5,611	
		임시세외수입(전년도 수입)	2,965	2,692	
	A+B			133,399 (18.4)	112,268 (17.0)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수입 (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68,328	67,463	
	A+B+C			201,727 (27.8)	179,731 (27.2)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2) 과태료 등 부과형의 징수율 낮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와 유사한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징수율보다는 낮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과 같이 회계처리과정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의 여지가 없으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징수하므로 체납의 발생 여지가 적음. 그러나 과태료 등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것은 체납의 발생 여지가 높음

〈표 5〉 세외수입의 징수율

(단위: 조 원, %)

연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2011	52.3	92.5	58.3	90.1
2012	53.9	92.2	66.2	90.8
2013	53.8	92.3	72.6	91.9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2~2014.

-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 같은 부과형의 세외수입은 납부 저항도 심하며 체납 발생률이 매우 높음
 - 이들의 징수율은 50% 전후로 체납이 많은 실정이며, 징수-부과 및 관리 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함

〈표 6〉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원별 징수율(2013년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76,528	75,634	98.8
	일반회계	50,943	50,358	98.9
	- 재산임대수입	2,663	2,570	96.5
	- 사용료수입	11,456	11,230	98.0
	- 수수료수입	9,927	9,903	99.8
	- 사업수입	9,228	8,989	97.4
	- 징수교부금수입	10,600	10,600	100
	- 이자수입	7,068	7,066	100
	기타 특별회계	25,585	25,276	98.8
	- 재산임대수입	3,221	3,214	99.8
	- 사용료수입	9,593	9,481	98.8
	- 수수료수입	214	214	100
	- 사업수입	10,908	10,764	98.7
	- 징수교부금수입	90	90	100
- 이자수입	1,558	1,513	97.1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559,588	503,196	89.9
	일반회계	370,044	336,603	91.0
	- 재산매각수입	17,550	17,489	99.7
	- 잉여금	75,011	75,011	100
	- 이월금	153,695	153,668	100
	- 전입금	26,262	26,261	100
	- 예탁금 및 예수금	5,700	5,700	100
	- 융자금원금수입	883	882	99.9
	- 부담금	10,478	9,334	89.1
	- 기타 수입	49,366	45,020	91.2
	· 변상금 및 위약금	901	533	59.1
	· 과태료	3,346	1,513	45.2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999	1,384	46.2
	- 전년도 수입	31,099	3,237	10.4
	기타 특별회계	189,544	166,593	87.9
	- 재산매각수입	6,171	6,170	100
	- 잉여금	33,661	33,661	100
	- 이월금	22,200	22,199	100
	- 전입금	69,948	69,886	99.9
	- 예탁금 및 예수금	8,896	8,896	100
	- 융자금원금수입	2,677	2,598	97.0
	- 부담금	15,153	13,675	90.2
	- 기타 수입	8,491	6,543	77.1
	· 변상금 및 위약금	4.5	12	26.8
	· 과태료	4,037	2,409	59.7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6	98	49.9
· 체납처분수입	07	03	44.3	
- 전년도 수입	22,348	2,965	13.3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014.

3.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화에 의한 관리

1) 새로운 개념에 따른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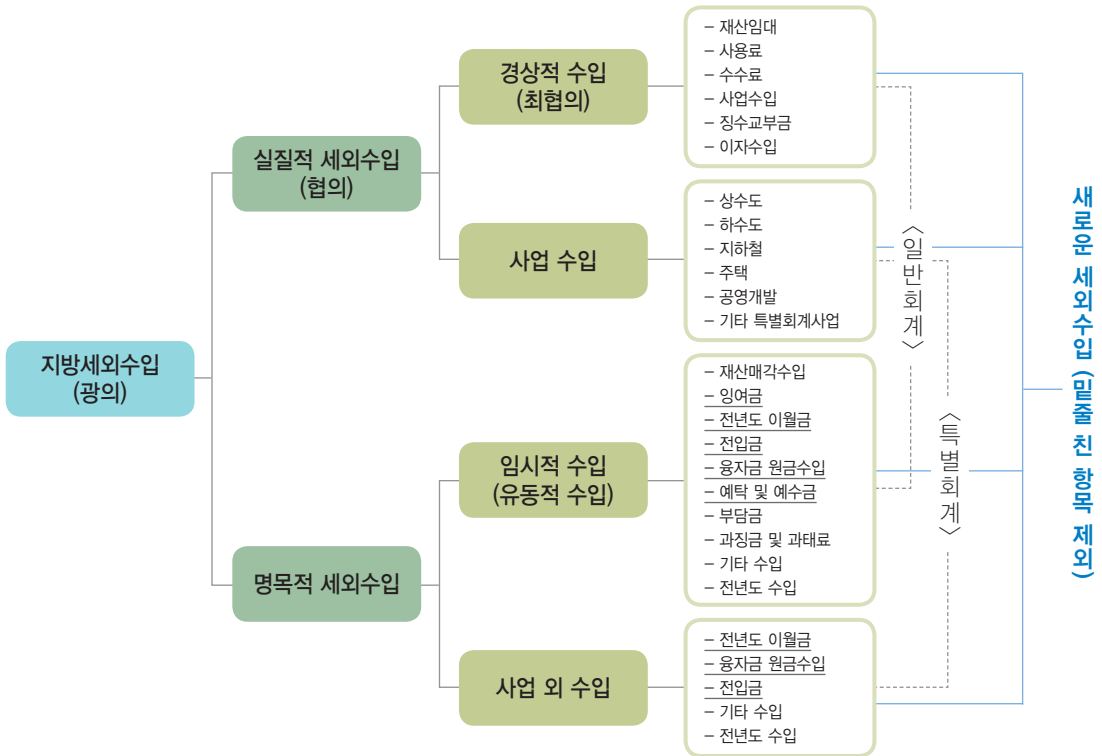
■ 기존의 정의

- 기존의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음. 이러한 광의의 세외수입에는 전입금, 이월금 등 회계기술상의 수입이 포함되어 지방세입에서 세외수입의 규모와 비중이 과대 포장됨
- 회계기술상의 명목적 수입이 세외수입에 포함됨으로써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의 효율화, 지방세외수입의 증대에 혼란이 발생하였음. 예를 들면, 세외수입 증대의 분석·평가에서 이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고, 이를 제외하기 위해 정상적 수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일부 혹은 중요한 부분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매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일반회계 정상적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확충노력도를 분석함)

■ 새로운 정의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거나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 징벌적 수입, 적극적·창조적인 행정 및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 등으로 정의하고 회계기술상 수입은 제외하는 개념 정의가 필요함
- 세외수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함으로써 요금인상, 부과·징수의 효율화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행정·경제활동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 세외수입의 실질적인 재원확충을 기대할 수 있음
- 세외수입 업무 및 정보시스템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게 설계할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세외수입의 분석·평가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그림 2〉 새로운 지방세외수입의 범위



* 밀줄 친 항목은 회계조작으로 발생하는 수입

2) 새로운 유형화에 따른 유형별 관리 필요

■ 기존의 분류

- 앞의 <표 1>과 같이 세외수입의 유형을 세원의 성격보다 수입의 외형에 중점을 둘 경우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관리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함
- 명목적 세외수입에 회계기술풀 발생하는 수입뿐만 아니라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과 같은 일반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체계를 갖는 실질적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세외수입 분류가 불완전함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실질적 수입과 명목적 수입 혹은 정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등과 같은 세외수입 분류는 부과·징수 및 관리, 재원 확충방안 등을 논할 때 적절한 분류 방식이 될 수 없음

■ 새로운 분류

-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의 가격기능 적용, 부과·징수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재원증대 방안 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원에 대하여 부과형과 비부과형의 원칙으로 수입원의 특성에 따라 세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 부과형, 비부과형 및 세분류 유형에 따라 요금현실화, 부과·징수체계의 효율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등으로 세외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과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유형의 세외수입
- 징수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행정서비스 대가 수수 유형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으로 분류
 - 행정서비스 대가 유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징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입임. 전자는 사용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등이 있고, 후자는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이 해당함. 이 유형의 세외수입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징수되거나,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납부하므로 체납률이 낮음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유형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위약금 및 변상금, 과태료, 체납처분수입, 일반부담금 등으로, 이들은 체납률이 높아 징수·관리체계의 효율화 중점 대상이 될 수 있음

〈비부과형〉

- 행정기관 내부 또는 행정기관 간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명목상의 세외수입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유형의 세외수입
 - 예산회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은 회계년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인 징수교부금 등
 -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부담하게 하는 세외수입이 아닌 유형은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 수입 중 불용품매각대, 보상금수납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기부금 등임

〈표 7〉 새로운 지방세외수입의 분류

구분	세부유형	세외수입 종류	특성
부과형 세외수입	행정서비스 대가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요금 체계상 수입 •체납률 낮음
	•경제활동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경제활동 수입 •체납률 낮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일반부담금, 기타 수입 중 체납처분수입, 그 외 기타 수입	•징벌적 수입 •체납률 높음
비부과형 세외수입	회계처리 과정상 발생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경리기술상 수입 ※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치단체 간 재원이전 등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경제활동 수입 •체납률 없음
	비부과형	매산매각수입,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 수입 중 불용품매각대, 보상금수납금, 시도비반환금, 기부금	•일시적·불안정 수입 •체납률 없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4. 지방세외수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1)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단위 업무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료취합 및 세외수입 관리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음
 -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새울정보시스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개발한 개별 업무시스템이 혼재함
 - 새울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주·정치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관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등 4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사용함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4가지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본청 및 25개 자치구)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함. 서울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본청과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음
 - 환경개선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관리업무는 새울정보시스템에서 부과, 수납,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개발한 자체개발시스템에서는 개별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분산 처리되고 있어 세외수입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표 8〉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명	사용 자치단체	관리 분야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본청 및 자치구) 제외한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	새울행정정보시스템의 4개 세외수입업무 제외
새울행정정보시스템	전국 시군구	주·정치위반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서울시자체 구축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서울(본청 및 자치구)	특별회계까지 포함
기타 개별 업무시스템	202개 시스템	- 주·정치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24개 개별 업무시스템 - 예금이자 등 기타 세외수입 업무 78개 개별업무시스템

- 지방세외수입 관리의 분산 및 개별 시스템은 업무담당자의 사용편의성이 높고 데이터 입력 및 활용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세외수입자료의 통합, 가공 및 생산체계가 부족한 단점이 있어 업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함
 - 업무시스템의 연계·통합으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요금현실화 방안, 행정의 제재수단으로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창조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세입증대 마련을 위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함

2)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효과적 활용

- 표준세외수입재정정보시스템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세목 수는 2,771종으로, 실질적 세외수입의 세목이 2,586개, 회계기술상 명목적 세외수입 세목이 185개이나 실제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건수가 적은 세목이 너무 많음
 - 세외수입 세목 신설의 남발도 있지만 세외수입 관리 소홀의 문제도 있음

〈표 9〉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의 세목수

구분	세목수	구분	세목수
실질적 세외수입	2,586	명목적 세외수입	185
- 경상적 세외수입	1,484	- 보전수입 등	93
• 재산임대수입	72	• 잉여금	35
• 사용료수입	809	• 전년도 이월금	33
• 수수료수입	311	• 융자금 원금수입	24
• 사업수입	189	• 예치금회수	1
• 징수교부금수입	42	- 내부거래	92
• 이자수입	61	• 전입금	77
- 임시적세외수입	1,103	• 예탁금 및 예수금	13
• 재산매각수입	19	• 기타 경상이전수입	2
• 부담금	92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71	계	2,771
• 기타 수입	320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지방세외수입의 세목을 신설한 후 부과하지 않았거나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한 세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줌
 - 표준세외수입재정정보시스템이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미사용 세목은 439개 세목임
 -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부과하지 않은 세목은 609개 세목이며, 5개 미만의 단체에서 부과한 세목은 2,009개 세목임
 -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징벌적 부과근거로 세목을 설정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위약금 및 변상금, 과태료의 경우 2002년부터 87개 세목이 미부과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31개 세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부과되지 않았음

- 지방세외수입 2,771종 중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10회 미만으로 부과된 세목이 799종(29%)이며, 100회 미만으로 부과된 세목이 1,352종(49%)으로,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상의 세외수입으로 설정된 절반의 세목이 13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회 미만으로 부과하였음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목 설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의 소홀 및 비효율성 문제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됨

〈표 10〉 지방세외수입 부과건수 분포(2002~2014)

부과		건수
10회 미만	미사용(0회)	439
	1회	93
	2회	62
	3회	32
	4회	35
	5회	68
	6회	16

부과		건수
10회 미만	7회	21
	8회	21
	9회	12
	소계	799(29%)
10~100회 미만	10~20회	135
	20~50회	220
	50~99회	198
	소계	553(20%)
계		1,352(49%)

- 지방세외수입 표준시스템은 일종의 세외수입의 세목에 대한 이력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스템에서 설정한 세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과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표준시스템에 세목이 설정된 후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미흡한 세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부과 징수가 많은 세목에 대하여는 부과 징수 및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II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1.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종류

1) 지방보조금의 개념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함¹⁾
- 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신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장의2 지방보조금의 관리(제32조의2~제32조의10)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이전에 비해 강화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15.1.1.부터 시행되었음

2) 지방보조금의 종류

-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됨
 -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 민간보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포함됨

1) 여기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및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11〉 지방보조금의 분류

구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예산과목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 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운수업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	

자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 1. 1 제정)

2. 지방보조금 관리의 주요 내용

1)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²⁾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자원부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음

2)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함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하는데,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편성한도액을 설정한 후 예산을 편성함³⁾

(2)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크게 민간보조와 공공단체보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민간보조는 (i)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ii)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iii)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iv)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4가지가 해당됨
-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임. 여기서 공공기관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함
- 한편 지방보조금의 지원 제외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외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 12〉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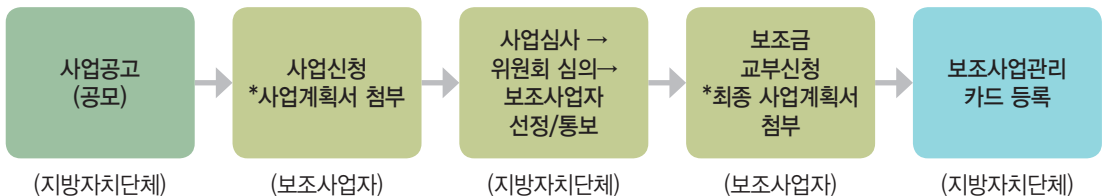
구분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 배제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치단체 직접 운영 행사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지원중단 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1)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함. 이때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통보함
-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사업 관리 카드에 의해 이력을 관리하게 됨

〈그림 3〉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2)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기재)를 제출하고,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로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하여야 함. 이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함

3) 총한도액 적용대상은 민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에 의하며, 한도액 산정기준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경우 한도기준액에 포함되는 민간자본보조와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게 되며,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됨

(3) 지방보조금의 교부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등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후에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함. 즉,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대상사업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회계관리가 요구됨
- 지방보조사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지방보조금 계좌 통장 및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지방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관리하여야 함

4)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은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해야 함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의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제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및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음. 특히,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 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5)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와는 별도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이루어짐
-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매년)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함
- 지방보조사업의 평가대상은 민간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평가기준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성과평가 절차는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5월)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다음 연도 예산 반영(11월)의 절차에 의하며, 평가점수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하여야 함

3.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 실태

1)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 현황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7조 1,672억 원이며, 연평균증가율(2011~2014년)은 7.4%(단, 2015년도 증가율은 0.7%로 급감)로 동일기간의 세출예산 연평균증가율 4.4%에 비해 높은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음

〈표 13〉 민간이전 보조금 예산 추이

(단위 :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세출예산	1,854,670	1,989,118	2,055,219	2,203,359	2,339,517
보조금예산	128,397	142,191	157,494	170,516	171,672
전년대비 증가율	-	10.7%	10.8%	8.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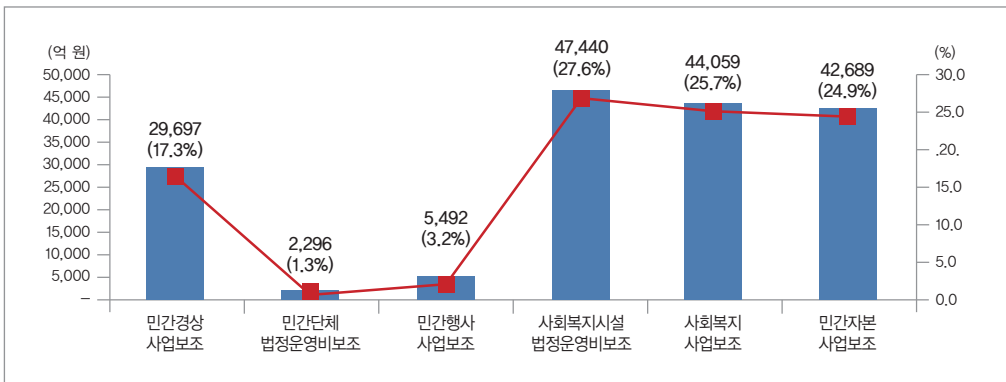
주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기준

-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과목별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가 47,440억 원에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5.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24.9%로 이들 3개 항목이 전체 민간이전보조금의 78.2%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는 17.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3.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1.3% 수준에 있음

〈표 14〉 민간이전 보조금의 예산과목별 규모와 비중

(단위 : 억 원, %)

예산과목	예산규모	비중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29,697	17.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2,296	1.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5,492	3.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47,440	27.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44,059	25.7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42,689	24.9
합계	171,672	100.0



2) 주요 문제점

-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점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등 기본적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규정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단체 자율운영(*조례)에 의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운영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음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제도개선 권고(2012.11), 대검찰청 수사에서 약 631억 원 상당의 보조금 허위 수령 사실 적발(2013.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당한 보조금 운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민들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입자'……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유가보조금 카드깡, 사업비 허위서류 작성, 공무원 결탁 등)
- 둘째, 재정공시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의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등 세부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시(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만 포함하고 있는데, 집행현황 공시도 대부분 자치단체(2012.8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189개 자치단체)가 사업명과 금액만 기재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셋째, 객관적 수요와 성과평가 없이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방보조금의 연평균증가율(2011~2014) : 7.4%(2010년 12조 8,397억 원 → 2014년 17조 516억 원), 민선단체장에 대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구 등 지역사회 압력, 민관 유착 문제 징후를 보이고 있음
- 넷째,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보조사업자가 유사사업의 수혜자로 재차 선정되는 등 보조사업자 이력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 다섯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변칙적 예산편성, 사업비 편성 원칙 위반의 포괄적 예산편성, 자치단체 주관 행사 경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칙 편성하는 등 예산기준과 어긋난 관행적 예산 편성 소지가 있음
- 여섯째,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복지보조' 과목 간 구분이 불명확함. 즉, 예산편성 기준에서 보조금 항목별로 목적 및 편성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이 불명확한 '회색지대(grey area)'가 존재함

4.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방향

1) 기본방향

- 지방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법령 및 조례에 입각한 지방보조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도모

하는 가운데, 효율성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평가, 사업추진 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보조금 관련 운영 내역의 적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함

2) 효율적 관리 방향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함. 3년 단위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비법령 지방보조금은 정부정책에 의해 2016년도 이후에는 운영될 수 없음.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중에서 중요성과 지역 영향 및 파급효과가 인정되지만,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야 함
- 형평성 및 특혜성 논란, 관행적 지원,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효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삭감 및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실시하고 지원사업 기준 소액, 수혜자 기준 소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지원 등 사업지원방식의 개선 필요
 - 국·도비보조사업과 중복되거나 소규모 지원되어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지원이 여러 사업 내역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업(예: 농업인단체 지원예산)은 통합지원하고 단순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농업보조금의 경우 회원수가 20명 이내로 소규모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과다 소요될 수 있어 통합 지원 등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
 - 소규모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별로 지원되어 장비 이용의 비효율, 지원단체와 비지원 단체 간의 형평성, 시설 및 장비의 개인화 염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 지원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표 15〉 참조)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표 15〉 농업보조금 관련 작목반별 지원내역 및 회원 수

작목반	회원수 (명)	지원내역	사업 내역	개선방향
의성대림공정육묘작목반	18	지게차 1대 (16,775천 원)	공정육묘 생산·농가공급 (년 2~3회, 80만 주)	통합지원 방식으로 관리체계 전환
한아름작목반	12	파렛트 600개 (16,600천 원)	사과 박스 이동(생산, 저장) (2014년 사과 380톤 생산)	
한우리작목반	9	지게차 1대 (13,500천 원)	사과박스 이동(생산, 저장) (2014년 사과 150톤 생산)	
춘산무당벌레 작목반	18	콤마포장기 2대 (2,500천 원)	사과주스 생산 (2014년 7톤 생산 출하)	

출처 : 의성군 지방보조사업(2015년) 현황자료를 토대로 작성

- 소규모 지방보조사업(예: 1천만 원 미만 사업)의 통합관리 및 일회성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등 사업재검토가 필요함
 - 지원사업 특성 상 각 지급대상 단체별로 소규모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예: 문화체육 분야 사업), 동일한 지급대상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함
 - 일회성 또는 간헐적 단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점검한 후, 법령 등에 의해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지원중단 등 사업 재검토가 필요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본래적 목적을 실현하고 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의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와 함께 사업수행부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감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를 구축할 것이 요구됨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편람, 2009.
- 행정자치부, 세외수입 통계연감, 2014.
- 김대영 외, 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 배인명 외,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 임상수, “지방세외수입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월간공공정책』, Vol. 118,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연구원, 2015.8.
- 임성일 외, 의성군 지방보조금의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조임근, 지방세외수입 부과 징수 관리의 발전방안, 2015년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2015. 9.
- 홍중현,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 지방재정발전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015.)

2015

- 91호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 92호 2015년도 지방재정 정책의 운영방향
- 93호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쟁점 및 정책방향
- 94호 국제통계로 본 대한민국의 자연재난 및 사회안전 수준
- 95호 공공체육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방안
- 96호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의 쟁점과 적용가능성 탐색
- 97호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 동향 및 개선방향
- 98호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에 대한 사회성과 보상방식의 지원제도 도입

2014

- 69호 지역공동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70호 지방자치에 대한 한·일 지방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 71호 교육감의 위상과 선임방식의 개선방안
- 72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을 중심으로
- 73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 74호 지방자치단체 코퍼티션(Coopetition) 향상 방안
- 75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국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방향
- 76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기반 인적자원 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 77호 건강보장과 지방자치
- 78호 6.4 지방선거의 결과 분석 및 함의
- 79호 재난안전대책의 현재와 미래
- 80호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재정의 다각화 방안
- 81호 지역주민 행복도 지수 도출 개념 및 측정방안
- 82호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 83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정책
- 84호 우체국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제공방안
- 85호 책읽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 86호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 87호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추진방안
- 88호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커뮤니티매핑
- 89호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90호 새마을운동의 미래와 방향

